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9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 박균택·주철현·유동수

박지원 • 박홍근 • 김현정

박홍배 • 박정현 • 김문수

이성윤 · 복기왕 · 민형배

한민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가족·친족 사이의 신뢰와 유대 관계가 자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입법 취지가 반영되었던 법 제정 시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 가족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겨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헌법불합 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

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 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예방하고자 함.

아울러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친족간의 장물범죄에 관한 형의 필요적 감면을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28조 및 제365 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등)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 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 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범해진 제323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이 조의 죄를 범한 자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간 범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①直系血族,配偶者, 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

②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 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한다.

③<u>前 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u> 共犯에 對하여는 前 二項을 適 用하지 아니한다.

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前3條 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第328條第1項, 第2項의 身分關 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 을 準用한다.

②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 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 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滅 輕 또는 免除한다. 但,身分關 개 정 안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등)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범 해진 제323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분관 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같 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 제362 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 1항 또는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이 조의 죄를 범한 자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 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